

〈특집〉

학술지와 학술진흥 -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어 -

金昌祿*

I. 머리말

학술지는, 학자¹⁾들이 학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학술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술진흥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학술지들의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당위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²⁾(이하 ‘학진’)의 학술지 관련 제도들이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제도들의 당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법학학술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법학자에게도 ‘학술지와 학술진흥’이라는 주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학술지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함으로써 ‘법학’을 둘러싼 환경이 현저하게 변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새삼 그 ‘제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이 발표에서는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술지와 학술진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만, 발표자는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하 이 글에서는 ‘학자’를 ‘학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2) 2009년 3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연구재단법」이 통과되어, 오는 6월말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출범하며, 300여 명의 정원에 2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만 건이 넘는 연구 과제를 지원 관리하는 ‘매머드 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공룡의 탄생, 위협받는 기초학문 - 인문사회 학자들, 한국연구재단 설립 재검토 주장」, 『교수신문』 2008.8.25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85>) 참조. 이 글에서 인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2009년 5월 14일에 검색한 결과에 따른다. 이하 같다.

연구해 온 연구자가 아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발표를 하는 것은 발표자의 ‘수비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발표는, 1988년 5월부터 약 3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의 발간에 참여했던 경험과 두 개의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에 의지하여, ‘학술지와 학술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인상’을 정리해 봄으로써 논의의 심화를 위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발표가 “『서울대학교 법학』 반세기”를 축하하는 자리에 ‘작은’ 축하를 더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학술지에 관한 제도

1. 학술지 평가

학진은 1998년 이래로 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이하 양자를 통칭할 때는 ‘등재(후보)학술지’)를 선정해오고 있다.

우선 신규로 신청을 받아 신규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일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다. 등재후보학술지에 대해서는 선정 후 1년 이후부터 신청에 따라 매년 계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년 연속 80점 이상 득점인 경우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하며, 75~79점 득점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의 상태를 유지시키며, 2년 연속 75점 미만 득점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시킨다. 등재학술지에 대해서는 선정 후 2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신청에 따라 계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80점 이상 득점인 경우에는 등재학술지의 상태를 유지시키며, 2회 연속 80점 미만 득점인 경우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시킨다.³⁾

1) 신규평가

「2008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 (신규)」(2008.5)⁴⁾에 따르면, 신규평가의 사업목적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것과 “재단의 각 연구비지원에 따른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규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후 평가대상 학술지와 자체평가서, 증빙자료 양식, 투고논문 대장, 임원명단, 학회규정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학술지 체

3)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2007.5 (http://www.krf.or.kr/KHPapp/program/pgmRead.jsp?sub=menu_11&codeL=10&no=45).

4) http://www.krf.or.kr/KHPapp/program/pgmRead.jsp?no=45&codeL=10&sub=menu_11

계평가(30점)와 학술지 내용평가(70점)로 나누어 실시하며, 후자는 다시 패널위원 평가(20점)와 주제전문가 평가(50점)로 나누어 실시한다. 평가결과 75점 이상일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다. 다만, 각 평가방법별 평가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규평가의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신규평가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
	2. 편집위원의 전국 분포 및 중복성	3
	3. 논문 게재율	2
	4. CYBER 출판여부	4
	5.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	2
	6.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 수록형태	4
	7. ISSN 부여	1
	8. 정시발행	3
	9.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3
	10.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3
	11. 연구윤리 규정 제정 여부	1
	12. 학술지 역사	1
	12개 항목	30
패널위원 평가	1.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	2.5
	2.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엄정성	2.5
	3.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성	2.5
	4. 편집위원의 전문성	2.5
	5. 투고규정의 구체성	5
	6.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6개 항목	20
주제전문가 평가	1.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15
	2. 학술지의 전문성	10
	3.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10
	4. 논문초록의 질적수준	10
	5.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	5
	5개 항목	50

특히 체계평가의 경우 각 항목별로 상세한 세부기준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논문게재율의 경우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논문게재율 (2점)

- 게재율은 투고된 논문 중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비율을 말한다.
- 게재율 산정 공식 : $(A / (B + C - D)) \times 100$

※ A : 2007년에 게재된 논문 수 B : 2007년에 투고된 논문 수 C : 2006년에 투고된 후 2007년에 게재된 논문 수 D : 2007년에 투고된 후 2008년에 게재된 논문 수
--

- 학회의 규정에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논문(예 : 학술대회 발표 후 심사없이 실리는 경우), 투고논문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점수부여

	점 수	점수
게재율		
100% 이상		0점
99% ~ 70%		1점
69% 이하		2점

※ 투고건수 = 2007년에 투고된 논문 수(B) + 2006년에 투고된 후 2007년에 게재된 논문 수(C)

2) 계속평가

「2008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 (계속)」(2008.5)⁵⁾에 따르면, 계속평가의 사업목적은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학술지에 대한 계속평가를 실시하여 학술지의 체계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계속평가의 항목과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신규평가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5) http://www.krf.or.kr/KHPapp/program/pgmRead.jsp?no=45&codeL=10&sub=menu_11

<표 2> 계속평가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 수록형태	4
	2.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0
	3.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4. 논문 게재율	5
	5.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여부	2
	6.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6
	7. CYBER 출판여부	5
	8.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
	9.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	2
	10. 편집위원의 전국성	2
	11. 편집위원의 중복성	1
	12. 연구윤리 규정 제정 여부	1
		12개 항목
패널위원 평가	1.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10
	3. 논문집의 체계와 구성	5
	4. 편집위원의 전문성	5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6.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7.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7개 항목

특히 두드러지는 차이는, 평가가 학술지 체계평가(45점)와 패널위원 평가(50점)로만 이루어지고 신규평가의 “주제전문가 평가”는 패널위원 평가에 통합된 점,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학술지 체계평가”의 경우 “편집위원의 심사점유율”이 추가되는 대신 신규평가의 “ISSN 부여”와 “학술지 역사”가 빠지고, 신규평가에 비해 “학술지 정시발행 여부” / “논문게재율” /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의 배점이 각각 3점→10점 / 2점→5점 / 3점→6점으로 크게 높아진 점, “패널위

원 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의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성”, “투고규정의 구체성”, “학술지의 전문성”이 빠진 점 등이다.

계속평가의 경우에도 “체계평가 세부기준”이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학술지 평가 결과의 활용

「2008년도 학술지평가 신청요강 (신규)」에 따르면, 학술지 평가의 결과는 학술연구비 지원 및 연구결과 평가에 연계하고,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에 연계하고, 학술연구업적 평가자료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학진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서 등재(후보)학술지에 일정 수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 신청자격으로서 요구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결과를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책무”로서 요구되고 있다.

학진의 국내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은 등재(후보)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술대회 개최지원사업에서도 2009년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⁶⁾

그리고, 학진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임용,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한 연구업적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학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3. 등재(후보)학술지의 현황

1) 현황 일반

2009년 4월 14일 현재 등재(후보)학술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6) 「2009년도 학술대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요강」, 2009.3 (http://www.krf.or.kr/KHPapp/program/pgmRead.jsp?sub=menu_04&codeL=4&no=19).

<표 3> 등재(후보)학술지 총괄 현황⁷⁾

구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복합	계
등재	304	364	80	146	124	65	47	28	1,158
등재후보	142	202	22	62	63	13	46	23	573
계	446	566	102	208	187	78	93	51	1,731

<표 4> 등재(후보)학술지 총괄 현황 (연도, 분야별)⁸⁾

구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복합	계
1998년	9	15	11	13	4	1	3	0	56
1999년	40	54	24	35	20	18	6	0	197
2000년	30	38	14	18	18	11	4	1	134
2001년	42	48	7	22	11	4	11	0	145
2002년	33	45	4	18	19	11	5	2	137
2003년	98	107	19	30	26	18	16	14	328
2004년	38	54	2	15	16	6	9	10	150
2005년	38	42	4	22	21	1	11	9	148
2006년	36	44	8	13	10	3	5	6	125
2007년	45	62	5	12	21	2	8	2	157
2008년	37	57	4	9	20	3	15	7	152
2009년 ⁹⁾	0	0	0	1	1	0	0	0	2
계	446	566	102	208	187	78	93	51	1,731

7)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02_03.jsp?sub=menu_02

8)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02_03.jsp?sub=menu_02

9) 2009년의 경우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표에 기재된 2건은 학회지의 통합 등에 따른 건수이다.

2) 법학학술지의 현황

「등재후보학술지 목록」¹⁰⁾ 및 「등재학술지 목록」¹¹⁾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 현재 등재후보학술지 / 등재학술지 총 574개 / 1,155개¹²⁾ 중, 거의 대부분의 법학학술지¹³⁾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분야 학술지는 각각 202개 / 364개이며, 법학학술지는 각각 49개 / 41개¹⁴⁾이다.

전체, 사회분야 및 법학분야에서 등재후보학술지 /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의 개수를 연도별로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등재(후보)학술지 현황 (법학분야, 사회분야, 전체)

연도 \ 분야	법 학		사회 전체		전체	
	후보	등재	후보	등재	후보	등재
1998	0	0	15	0	56	0
1999	4	0	54	0	197	0
2000	2	0	38	0	134	0
2001	2	1	48	28	145	105
2002	4	1	45	20	136	90
2003	29	0	107	19	327	78
2004	6	4	54	63	150	193
2005	6	13	42	80	148	219
2006	11	8	44	66	125	212
2007	10	11	62	55	157	150
2008	16	3	57	33	152	106
2009	0	0	566	0	2	2

10) [http://www.krf.or.kr/nkrf/bus_info/haksul/new_list\(1\).xls](http://www.krf.or.kr/nkrf/bus_info/haksul/new_list(1).xls)

11) http://www.krf.or.kr/nkrf/bus_info/haksul/list_02.xls

12) 「등재(후보)학술지 총괄 현황」 「등재(후보)학술지 총괄 현황 (연도, 분야별)」과 「등재학술지 목록」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전자에 따르면 등재학술지의 계가 1,158인데 대해, 후자에 따르면 1,155이다. 또 전자에 따르면 2009년의 계는 2인데 대해, 후자에 따르면 4이다.

13) 등재학술지인 『해사법연구』만은 “농수해”로 분류되어 있다.

14)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 1> 및 <별표 2> 참조.

법학학술지의 경우 전체 및 사회분야 학술지에 비해 등재후보학술지의 비율이 높으며(54% / 33% / 36%),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등재후보학술지가 된 비율이 높다 (41% / 24% / 29%). 이것은 2007년 7월 3일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전후하여, 법학학술지들이 대거 등재후보학술지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학술지에 관한 제도에 대한 평가

1. 변화

학진의 학술지 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학술지와 학회와 학자들에게 가져온 변화는 적지 않다.

우선 학술지와 관련하여, 학진의 학술지 평가는 단기간에 한국의 학술지들을 크게 성장시켰다. 논문투고규정, 간행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되거나 정비되었으며, 편집위원회도 정비·강화되었다. 논문에는 한국어와 외국어의 초록과 주제어가 기재되게 되었고, 참고문헌 등 서지정보도 충실해졌다. 정시 발행이 엄격하게 지켜지게 되었으며, ISSN이 확보되었고, Cyber출판도 활성화되었다.

학회와 관련해서도, 학술지에 보다 많은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학술대회의 개최가 활성화되었고, ‘회원 배가 운동’도 전개되었다. 회원·편집위원의 ‘전국성’이라는 기준이 도입된 결과 학회의 전국화도 도모되었다. 초기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회들의 경우 논문 부족을 걱정하던 입장에서 ‘논문 과잉’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으로 입장이 크게 호전되기도 했으며, 회비와 논문게재료 덕분에 재정면에서도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진 경우도 있다.

학자 개인과 관련해서도, 활성화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며, 논문을 발표할 공간도 늘어났다.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각종 형태의 ‘금전’과 연계됨으로써 ‘박봉’을 보완해주는 경제적 효과도 생겨났다.

이와 같이 학진의 학술지 평가는, 한국의 학술지와 학회와 학자들에게 그간 충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극을 제공했고, 그 결과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2. 문제점

하지만, 학진의 학술지 평가에 대해서는 그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1) 국가 주도의 획일성

우선 국가 주도의 획일성이 지적된다. 학진의 근거법률인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415호, 2009.2.6)에 따르면, 학진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운영되는 재단으로서(제26조),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검사 등 설립·운영의 모든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제16, 29, 30, 3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스스로 수립한 종합계획(제5조) 등에 따라 담당하는 학술연구평가(제11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제14, 17조)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사실상 모든 학술지에 대해 평가를 해서 서열을 매기고 그 결과를 학술지원에 연계하는 제도는 이른바 ‘주요 선진국’에는 없다. 학술지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제도조차,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¹⁵⁾ 기간과 형식 등 일체의 틀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지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학술의 기본성격과 충돌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 점에서 “비슷한 편집 규정과 심사 절차”에 따라 “하나의 주형 틀에서 동일한 모양을 지닌 학술지를 찍어내”게 하고 있는¹⁶⁾ 학진의 학술지 평가는 출발선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계량화

국가 주도의 획일성은 계량화로 이어진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학진의 학술지 평가항목은 거의 대부분 양과 형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계량화 선호는 우선 적은 비용(시간, 인력)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경쟁력 강

15) 백종섭, 「국내외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82면.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view.jsp?cu_idx=159&bbs_seq=001&sub=menu_06&getP=1).

16) 이종우, 「시평 : 학술지 평가를 말한다」, 『안과 밖』 15, 2003, 320면.

17) 백종섭에 따르면 학진의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담당자는 각각 1명이다. 백종섭,

화”라는 명목 아래 “목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¹⁸⁾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터이다. 위로부터의 압축성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국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에는 계량화야말로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이다.

그 결과, 계량화에 장애가 되는 학술분야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다. 연구방법과 자료인용 방법 등 논문기술 방법이 서로 다른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¹⁹⁾ 계량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학회에 유리한 기준은 학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와, “신생, 혹은 군소 학술지와 이를 발간하는 중소, 혹은 비주류 학회의 몰락”을 초래하고 “학계 전반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의 등장과 성장을 봉쇄”하여 “학문의 보수화를 촉진”²⁰⁾한다. “정부가 나서서 설익은 열매지만 빨리 따 숫자를 채우라고 재촉”²¹⁾하는 상황은 개별 학자들에게도 ‘대량생산’의 압박으로 작용함으로써 “다년에 걸친 호흡이 필요한 연구나 자유로운 글쓰기는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논문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읽을 만한 논문은 예전만도 못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한다.²²⁾

한걸음 더 나아가, 계량화는 그 본래의 목표를 뛰어넘어 학술지 평가 결과를 개별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시키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비등재(후보)학술지에 실린 논문보다, 등재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등재후보학술지에 실린 논문보다 더 우수하다는 증명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러한 듯이 처리된다.

SCI(Science Citation index)를 개발한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학술정보 제공이 일차적인 목표인 것이다. 때문에 이를 교수들의 업적 평가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다. ISI가 평

위의 보고서, 47면.

18) 「[집중진단 SCI]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신문』 2002.5.1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

19) 장덕현,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004.3, 367면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view.jsp?sub=menu_06&bbs_seq=001&cu_idx=145&getP=1).

20) 위의 글, 366면.

21) 이종우, 「시평 : 학술지 평가를 말한다」, 『안과 밖』 15, 2003, 313면.

22) 위의 글, 311-312면.

가하는 것은 저널이지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아니다. 권위있는 저널에 실린 논문 일지라 하더라도 모두 우수한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평가 용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못박아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SCI 등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모두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는 우수한 논문이 실리는 것이 상례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학문연구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따라서 SCI를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가 관철된다.²³⁾

3) 과도한 부담

항목별로 세세하게 계량화되어 점수가 매겨져있고, 게다가 매년 변하는 학술지 평가의 세부기준은 고스란히 학계의 부담이 된다. 한국의 학회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학술지 발간은 활발하다는 조사결과²⁴⁾는 한국의 학회가 떠안고 있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줄 뿐이다.

초기의 기준을 충족한 등재(후보)학술지의 수가 늘어나면서 비중이 늘어난 평가기준인 게재율(탈락률)²⁵⁾을 맞추기 위해 “유령 논문”을 동원한 “허위 조작”이 이루어지고, 편집위원의 전국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령 편집위원”이 등장한다.²⁶⁾ 연간 발행횟수 항목의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늘린 발행횟수를 채워야 하고, 돌아서면 닥치는 계속평가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학술지를 담당하는 학회 임원 자리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경이다. 개인적으로도 연구업적의 %를 채워야 하니 더더욱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23) 「[집중진단 SCI]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신문』 2002.5.1.

24)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내 학술단체 38%가 사무직원이 없고, 33%가 사무공간이 없고, 60% 이상이 연구인력과 연구공간이 없음에도, 80%가 정기학술지를 발행하며, 약 90%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선영, 「국내 학술단체 연구활동 조사,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110-111면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view.jsp?sub=menu_06&bbs_seq=001&cu_idx=88&getP=1).

25) 연구자가 적은 분야의 학술지에는 애당초 투고가 적게 마련이고, 엄격한 심사를 하는 학술지에는 투고가 줄어들게 마련인데도, 어느 학술지나 게재율이 69% 이하가 되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다.

26) 「논문게재율 허위 조작도 ... “평가항목 현실화해야”」, 『교수신문』 2008.6.30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65>) ; 「학회측 “평가정책이 논문 왜곡” -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등재 평가, 실효성 있나」, 『교수신문』 2008.6.30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42>).

3. 질의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의 학술지에 관한 제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다’라는 것이 될 터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위에서 제시한 제도 옹호론 속에 들어 있다. 계량화된 기준에 따른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 “평균”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체중계로 농구 선수를 선발”²⁷⁾하는 격인 기존의 제도는, 당장은 ‘신장계’가 없으니 ‘선수 선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중계’라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수한 선수 선발’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진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Korea Citation Index) 데이터 베이스, 학술지논문관리시스템(JAMS :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한국형인용지수(Kor-Factor) 분석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²⁸⁾ 말하자면 ‘신장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사회과학에 속하는 법학, 그 중에서도 기초법학의 연구자인 발표자에게는 여전히 적절한 측정기로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발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학술의 ‘길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건은 학술과 학술지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²⁹⁾ 그리고 ‘평균’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향전환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일본 법학자들³⁰⁾과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답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27) 이덕환, 「집중진단 SCI 교수평가 잣대 될 수 없는 이유」, 『교수신문』 2002.5.1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5>).

28) 고영만,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정책 방향」, 『학술정책』 2,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참조.

29)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학술지의 질과 관련하여, 지명도, 학회, 학술지의 내용, 투고자, 심사과정, 심사위원, 외관, 규모 등에 비해, “이용”(이용횟수, Impact Factor, 인용횟수)과 함께 “논문의 질”(내용 범위, 연구 방법, 데이터의 신빙성, 전문가 판단)이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상완·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2, 1999.6 참조.

30) 히토쯔바시(一橋) 대학의 미즈바야시 타케시(水林彪) 교수, 고토오 아키라(後藤昭) 교수, 쥬우쿄오(中京) 대학의 아사노 토요미(浅野豊美) 교수.

문1. 일본에도 공적으로 학술지에 랭크를 매기는 제도가 있는가?

답1. 없다. 다만, 과학연구비 신청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할 때, 그 논문이 실린 잡지가 심사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기입하게 하기는 한다.

문2. 만일 없다면, 그렇게 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답2. 잘 알 수 없다. 공정성 담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학계의 평가에 맡기자는 쪽으로 정착된 듯하다.

문3.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없는가?

답3. 없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

문4. 학술논문의 평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답4. 기준은 논문의 내용에 대한 학계의 '평가,' '평판'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연구비조성금 중 연구성과공개촉진비의 일부로서 신청을 받아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는 있지만, 학술지 일반에 대해 평가를 해서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하는 제도는 없다. 연구비의 주된 부분은 개별 연구자의 소규모 자유연구에 대해 지원하고, 교사나 일반 시민들의 연구를 위한 '장려연구'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년과제로서 지원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는 1년과제의 신청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 또 연구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간 평가나 사후 평가도 실시하지 않는다.³¹⁾

발표자의 '인상'에 따르면, 일본의 학술과 학술지의 질이 한국의 그것들보다 높은 것은 이렇게 평가는 적고 지원은 많기 때문이다. 평가에 시달리지 않고 풍요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가 있다. 학계가 "'평가,' '평판'"이라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각종 연구회, 교수들은 물론이고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술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정산해주는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 뒷받침해 온 결과이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한일 학자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며 때로는 역전되기도 한다.

학술지의 질을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자율적인 시스템이

31) 일본학술진흥회 홈페이지(<http://www.jsps.go.jp/j-grantsinaid/index.html>) ; 송재준, 「주요 선진국의 인문학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5면 이하 참조.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의 권위라는 것은 그 학문분야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구축되는 것이지, 외부의 권력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다.”³²⁾ “학계의 열린 공간에서 양심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³³⁾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양적 지표의 증대를 위해 학자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터이다. 물론,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학계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학진의 학술지 평가가 위력을 발휘한 것은 학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편승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아니겠는가?

IV. 로스쿨과 법학학술지

1. 등재(후보)학술지의 ‘위력’

로스쿨제도의 출범과정에서도 등재(후보)학술지는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다. 1,000점 만점에 각각 50점이라는 적지 않은 점수가 배정된 “교원의 담당교과목 적합성”과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산출하는 데 “학진등재(후보)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³⁴⁾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대학들이 치러야 했던 ‘홍역’의 근본원인은 총입학정원이라는 잘못된 틀과 그 때문에 초래된 불필요한 과잉경쟁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정해진 틀 속에서 주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법학교수들은 “학진등재(후보)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특별호’를 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고, 한 발 앞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어 있던 법학학술지들은 심하게는 평소의 네 배가 넘는 면수의 사실상의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될 로스쿨 평가에서도 등재(후보)학술지의 위력은 유지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평가가 인가기준의 지

32) 장덕현, 앞의 글, 373면.

33) 이종우, 앞의 글, 323면.

34) 다만, 연구업적으로 저서(전문학술저서, 연구서, 번역서)도 인정되었고, 비록 인정 비율은 낮았지만, “학진등재(후보)지”가 아닌 정기간행물 학술지와 기타 논문집에 게재된 국내학술논문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요도가 경감되어 있기는 했다. 이는 법학교육위원회가 특별히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7.10.30, 20-24·47-51면.

속적인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에 있어서도 등재(후보)학술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으니 인가과정에서 만큼의 위력은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위의 <표 5>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미 상당수의 법학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로스쿨 교수들이 등재(후보)학술지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평가의 부담을 그만큼 더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로스쿨 교수들에게 등재(후보)학술지의 위력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의 출범과 더불어 로스쿨 교수들은 법과대학 교수였을 때에 비해 행정과 교육의 면에서 큰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되었다.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는 로스쿨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교육을 꾸려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2004년 4월에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로스쿨을 출범시킨 일본 법과대학원 교수들이 쏟아냈던 ‘결국 체력싸움이다’라는 외마디의 의미가 이미 실감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등재(후보)학술지의 유지를 위한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진의 학술지 관련 제도들의 방향전환은 그 점에서도 필요할 터이다.

2. 법학학술지 강화의 필요성

한편 로스쿨의 출범은 또 다른 의미에서 법학학술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법학학술지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것 또한 근본적으로는 총입학정원이라는 잘못된 틀과 그 때문에 초래된 ‘실질에 대한 논의’의 실종 때문이지만, 로스쿨의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로스쿨의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러야 할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 판검사 임용 등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며, 그 중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것도 있다. ‘로스쿨이 길러내야 하는 법률가는 어떤 법률가인가’라는 본질적인 논점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로스쿨이 이미 출범한 지금도 로스쿨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앞에 놓고 머리 속에 떠올리는 형상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다만 많이 늦은 것은 아니다. 애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한국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인 만큼 적어도 10년은 내다보면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

더라도 심도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로스쿨제도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추가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대학원의 설립을 주도한 고 유기천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법률가가 될 사람들에게 “단지 법률 테크닉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고 탄탄한 법률 기초”를 쌓게 하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받침대”³⁵⁾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될 터이다.

그러기 위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협동이 필요하다. 이론의 실무적실성과 실무의 이론적실성의 교호가 요구된다.³⁶⁾ 그 협동과 교호를 위한 최고의 장이 다른 아닌 법학학술지이다. 로스쿨시대의 법학학술지는, 기존의 이론의 심화는 물론이고 실무와 교육의 ‘학술화’를 통해, ‘탄탄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한 토대로서 새롭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로스쿨 교육의 장으로서의 법학학술지

또한 법학학술지가 로스쿨 교육의 장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교정과 기술적인 편집이 주된 업무이기는 했지만, 3년 가까이 『법학』의 발간에 참여한 경험은, 발표자가 법학계의 말석이나마 지킬 수 있게 해준 커다란 자산이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로스쿨 학생들이 법학학술지의 발간에 참여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로스쿨에서와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³⁷⁾ 장차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든, 학술적인 토대도 갖춘 ‘탄탄한’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점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했거나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로스쿨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

35) 유기천, 「나와 박정희와 학문의 자유」, 『신동아』 1988년 8월호, 387면. 최종고,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 한들출판사, 2006, 408면에서 재인용.

36)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법과사회』 35, 2008.12 참조.

37) 이에 관해서는 우선 염규호, 「미국 대학교수와 연구논문 발표 - 언론법 논문이 법률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신문과 방송』 282, 1994.6 참조.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또한 로스쿨 교수들이 책임지게 될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이 되도록³⁸⁾ 하는 등,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되새기는 노력이 끊임없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어, 학진의 학술지에 관한 제도들과 그 공과를 점검하고, 학술지를 진정한 학술진흥을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술과 학술지의 질의 확보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학계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노력이야말로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항상 그러하듯이 열쇠는 주체가 쥐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학술진흥은 바로 그 주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법학계를 둘러싸게 된 새로운 ‘거친’ 환경이 법학 학술지의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으며, 로스쿨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환경에 맞춘 법학학술지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한다. 탄탄한 학술의 토대가 없이는 훌륭한 교육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이론과 실무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보다 많이 법학학술지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법학을 선도해온 『서울대학교 법학』이, ‘로스쿨시대’를 맞아도 법학학술지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리라 믿으며, 그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38)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법과사회』 39, 2009.6(계제 예정) 참조.

<별표 1> 법학관련 등재후보학술지 (2009.4.22)

선정 년도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007	사회	언론과 법	(사)한국언론법학회
2008	사회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사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회
2008	사회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사회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8	사회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2007	사회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사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2006	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2005	사회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6	사회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사회	서강법학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사회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2008	사회	법학논총	승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7	사회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사회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사회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사회	계간 저작권	저작권위원회
2004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7	사회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정 년도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2008	사회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사회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007	사회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07	사회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2008	사회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2001	사회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08	사회	법경제학연구	한국법경제학회
2003	사회	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2003	사회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7	사회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6	사회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3	사회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2004	사회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7	사회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05	사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4	사회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사회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8	사회	과학기술법연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5	사회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사회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08	사회	중국법연구	한중법학회
2008	사회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별표 2> 법학관련 등재학술지 (2009.4.22)

후보 선정 년도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등재년도
2005	사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2008
2003	사회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2003	사회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7
1999	사회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4
1999	사회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2003	사회	법과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5
2003	사회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6
2003	사회	법조	법조협회	2006
2003	사회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6
2003	사회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003	사회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5
2003	사회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5
2004	사회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2000	사회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07
2003	사회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
2003	사회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05
2003	사회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2004	사회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07
2003	사회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2003	사회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2005
2003	사회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7
2003	사회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2000	사회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2002	사회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2001	사회	산업재산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1999	사회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2004	사회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후보 선정 년도	분야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등재년도
2003	사회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5
2005	사회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003	사회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6
2005	사회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1999	사회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2002	사회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5
2003	사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	2005
2003	사회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7
2003	사회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7
2002	사회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003	사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2002	사회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6
2003	사회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2003	농수해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07